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9호)

##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12. 1.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12. 1.  
다. 상정·의결일자 : 2005. 12. 12. 총무위원회 상정·수정·가결

### 2.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2004. 9. 24 행정자치부령 제253호) 이후 정원 변동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재조정하고,  
나.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전전성 확보를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전면시행(2007. 1. 1)에 앞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2명을 증원함(안 제2조)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정원의 총수	658명	660명	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644명	646명	2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14명	-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1」에 규정함.(안 별표1)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전전성 확보를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전면시행(2007. 1. 1)에 앞서 회계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644명” 을 “646명” 으로 2명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조 제2항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관리 기관별로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 필요절차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관련 전담인력은 7급 1명, 8급 1명을 한시 정원으로 보강하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재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6급은 본청의 경우 현행 68명에서 72명으로 4명 증가되고, 직속기관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 증가되었으며,
  - 7급은 본청의 경우 82명에서 88명으로 6명 증가하고, 직속기관은 23명에서 24명으로 1명 증가하였으며,
  - 8급은 본청의 경우 58명에서 50명으로 8명 감소하고, 직속기관은 34명에서 33명으로 1명 감소하였으며, 사업소는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가하고, 읍면은 29명에서 34명으로 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9급의 경우 본청은 24명에서 22명으로 2명 감소하고, 직속기관은 8명에서 7명으로 1명 감소하였으며, 사업소는 5명에서 4명으로 1명, 읍면은 31명에서 27명으로 4명이 각각 감소하는 내용으로 재조정 되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 내용중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정원조정은 없는지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재조정 내용이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

- 문 :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확정되었습니까 ?
- ◉ 답 :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 문 : 의회사무과 일반직공무원 7급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원은 2명인데 정원을 2명으로 재조정이 가능합니까 ?
- ◉ 답 : 예, 의회사무과 9급 정원 1명을 줄이고 그 대신 7급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재조정은 가능합니다.

- 문 : 공통엑스포가 끝나면 엑스포사무국에 근무하는 인력을 환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
- 답 : 현재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표준정원을 초과한 정원(보정정원)이 약 25명 정도됩니다. 향후 5년간 퇴직, 전출인원을 감안하고 1년간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 문 : 증원하는 2명(7급 1명, 8급 1명)은 신규채용할 인원입니까 ?  
신규 채용되는 인력은 공무원 기본교육을 실시한 후 임용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답 : 증원되는 2명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관련하여 신규채용할 계획이며 임용전에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6. 토    론 : 없음

## 7.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 제3조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일반직공무원 정원중 본청 7급 정원 “88명” 을 “87명” 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7급 정원 “1명” 을 “2명” 으로 하며, 본청 9급 정원 “22명” 을 “23명” 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9급 정원 “1명” 을 없는 것으로 조정함.

## 8. 심사결과

- 2005. 12. 1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

덧붙임 :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부.

## 고성군조례 제 호

###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3조 관련 안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일반직공무원 정원중 본청 7급 정원 “88명”을 “87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7급 정원 “1명”을 “2명”으로 하며, 본청 9급 정원 “22명”을 “2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9급 정원 “1명”을 없는 것으로 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 관 별 직 급 별	본 청	의 회 사무 과	기 관 별 직 급 별	본 청	의 회 사무 과	기 관 별 직 급 별	본 청	의 회 사무 과
7급	82	1	7급	88	1	7급	87	2
9급	24	1	9급	22	1	9급	23	0

[별표 1]

##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기 속 관	사업소	읍·면
<b>총 계</b>	<b>660</b>	<b>301</b>	<b>14</b>	<b>125</b>	<b>32</b>	<b>188</b>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b>일반직 계</b>	<b>533</b>	<b>246</b>	<b>8</b>	<b>80</b>	<b>26</b>	<b>173</b>
4급	2	1		1		
4~5급	2	1		1		
5급	33	12	3	2	2	14
6급	143	72	2	12	5	52
7급	165	87	2	24	6	46
8급	127	50	1	33	9	34
9급	61	23	0	7	4	27
<b>별정직 계</b>	<b>14</b>	<b>1</b>		<b>13</b>		
6급상당	1	1				
6~7급상당	12			12		
7급상당	1			1		
<b>연구직 계</b>						
연구관						
연구사						
<b>지도직 계</b>	<b>25</b>			<b>25</b>		
지도관	2			2		
지도사	23			23		
<b>기능직 계</b>	<b>87</b>	<b>53</b>	<b>6</b>	<b>7</b>	<b>6</b>	<b>15</b>
기능6급	3	2	1			
기능7급	8	8				
기능8급	16	14			2	
기능9급	26	15	3	3	1	4
기능10급	34	14	2	4	3	11